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1월18일) 상정
-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1월18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녹지공원과장 권진해)

□ 제정이유

-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나무은행설치, 옥상녹화와 도시녹화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 각종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한 나무은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지정,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녹화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의 시상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 녹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함(안 제3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제정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 푸른부천 21 및 환경부서, 경실련 등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 제정하였음
○ 위원회 구성시 위원이 다른위원회와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대한 대책은	○ 공원, 녹지, 조정 및 환경, 사회단체등의 전문가로 구성 타 위원회와 중복성을 배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음
○ 녹지의 실명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임 그에 대한 대책은	○ 상가앞 주인에게 관리토록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특히,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업주가 원하는 수목을 식재 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85호
의결 연월일	2003. 1. 21 (제102회)

제안년월일 : 2003년 1월 18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제정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부천시녹지위원회로 수정 조항의 문구를 통일화하고, 위원회는 자문기능 뿐만아니라 주요 녹지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 특히, 위원회 구성이 18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수정하여 위원 과다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자문위원회를 부천시녹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수정(안 제5조)
- 녹지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안 제 11조제2항, 안 제 12조 제1항, 안 제 32조 제1항, 안 제 36조 제1항)
- 도시녹화 및 경관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 38조 제1항및제2항)
- 위원회 구성을 18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수정(안 제39조 제1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자문위원회”를 “부천시녹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2항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32조 제1항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36조 제1항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38조 제1항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녹지위원회”로 한다.

안 제38조 제2항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안 제39조 제1항 “18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조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자문위원회</u>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부천시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② ----- ----- ----- <u>녹지위원회</u> ----- -----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② ----- ----- ----- <u>위원회</u> ----- -----
제12조(나무은행) ① ----- ----- ----- <u>자문위원회</u> ----- -----	제12조(나무은행) ① ----- ----- ----- <u>위원회</u> ----- -----
제32조(지구의 지정) ① ----- ----- ----- <u>자문위원회</u> ----- -----	제32조(지구의 지정) ① ----- ----- ----- <u>위원회</u> ----- -----
제36조(녹화장려) ① ----- <u>녹지위원회</u> ----- ----- -----	제36조(녹화장려) ① ----- <u>위원회</u> ----- ----- -----
제38조(설치맞기능) ① ----- <u>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 ----- -----	제38조(설치맞기능) ① ----- <u>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녹지위원회</u> ----- -----

신·구 조문 대조표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제39조(구성)</p> <p>① ----- ----- <u>18인이내</u> -----</p>	<p>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p> <p>제39조(구성)</p> <p>① ----- ----- <u>15인이내</u> -----</p>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 85 호
의결 년월일	2003. 1. 21 (제102회)

제출년월일 : 2003. 1.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나무은행설치, 옥상녹화와 도시녹화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5조)
- 각종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한 나무은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지정,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 도시녹화에 필요한 녹화지원 및 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4조 및 제35조)
- 녹화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의 시상등의 규정을 마련함 (안 제36조)
- 녹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함 (안 제38조)

【수정안 포함】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녹지"라 함은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과 토지 소유주가 계약을 맺어 녹지로 조성 및 보전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녹지협정"이라 함은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 전원 합의에 의하여 녹지보전 또는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녹화추진지구"라 함은 특히 녹피율이 부족하여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나무은행"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

6.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7.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9.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관리자"라 함은 보호수보호수림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내 공공기관이 설치한 녹지, 일정면적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반시책을 통하여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보급함과 동시에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시민의 의식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시민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제안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민과 사업자는 녹지를 보전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녹지를 포함한 조경시설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시의 녹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시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2. 집중녹화지구, 각종사업장, 근린공동녹화 등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녹지현황조사)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부천시건축조례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다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5.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관리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내 또는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기타 당해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숙아주가가지치기 등 수목의 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숙아낸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증할 수 있다.

제9조(관리청의 의무) ①관리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민간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시 받은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관리청의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이 조성한 녹지의 훼손

3. 기타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②관리청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훼손한 경우는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택지의 개발 및 주택의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기존녹지의 보전(기존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훼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12조(나무은행) ①관리청은 제11조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재건축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녹지의 실명관리 및 수목의 등록관리

제13조(녹지의 실명관리) ①관리청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미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리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제15조(나무 등의 보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 수림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은 등록하여 관

리할 수 있다.

②수목수림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등록대상 수목수림의 결정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등록된 수목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등록된 수목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의 지원) ①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지정관리

제19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 ①관리청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을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수가 보호수로서 존치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수보호수림의 유지관리) ①보호수보호수림의 관리자는 보호수보호수림이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보호수림의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 도시설·도로시설·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원) ①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6장 시민녹지

제22조(계약의 체결 등) ①관리청은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초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 계약(이하 "시민녹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당해 토지에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녹지(이하 "시민녹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민녹지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

2.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중 필요한 것

가. 산책로, 광장 기타 시민녹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나. 시민녹지내의 녹지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민녹지의 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민녹지의 관리기간

5. 시민녹지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② 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녹지보전 계약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표지판 등의 설치)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민녹지임을 표시한 표지판을 당해 녹지내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계약체결후 보호웬스, 산책로 또는 로프책, 벤치, 안내판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목위주로 나무를 심도록 하며 그 설치내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한다.

제24조(행위의 제한) ① 시민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청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시민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시민녹지 지정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시민녹지 지정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녹지의 지정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녹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는 관리청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6조(시민녹지의 지원) ①시장은 시민녹지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유지관리)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녹지로 지정된 녹지에 대하여 관리청은 시설 정비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원상회복) 관리청은 기간의 만료 및 제25조에 의해 시민녹지를 해제한 때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장 녹지협정

제29조(협정의 체결 등) ①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또는 도로·하천 등에 인접하는 상당구간에 걸쳐있는 토지(이들 토지중 공공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가진 다수의 소유자는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전원 합의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역에 있어서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협정(이하 "녹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녹지협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협정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이하 "녹지협정구역"이라 한다)
2. 다음의 녹지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사항중 필요한 것
 - 가.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 등의 종류
 - 나. 수목 등을 보전 또는 식재하는 장소
 - 다. 보전 또는 설치하는 담장이나 울타리의 구조
 - 라.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사항
3. 녹지협정의 유효기간

4. 녹지협정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협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협정의 변경) 녹지협정구역내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당해 녹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등은 녹지협정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원이 합의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협정의 폐지)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당해 녹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등이 녹지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과반수 이상이 합의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녹화추진지구

제32조(지구의 지정) ①시장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녹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녹화추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녹화추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녹화기준안을 제시하여 그 지구의 주민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녹화추진지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공공시설의 녹화 및 지구내의 주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 및 식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녹화추진지구를 결정했을 때 및 녹화기준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녹화추진지구의 지정해제 및 그 구역의 변경과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의 폐지 및 변경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은 녹화추진지구 구역의 확장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33조(녹화추진의무) ①시장은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의거하여 녹화추진지구내의 공공녹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녹화추진지구내의 주민은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의거하여 그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전항의 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 등을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9장 녹화지원·장려

제34조(녹화지원)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협정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관리청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36조(녹화장려)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정상 등의 우수한 조정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시민참여) ①관리청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장 녹지위원회

제38조(설치 및 기능) ①도시녹화 및 경관등에 관하여 시장의 지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녹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지문에 응한다.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 추진과제 발굴과 녹화추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 및 방안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부천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 담당주사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0장 보 치

제44조(녹지조사) ①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자에게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녹지의 현황 및 기타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당해 토지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천시조경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조경관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